

인천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8067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8067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3가소49269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구영관(소송구조)

변론종결 2024. 10. 2.

판결선고 2024. 11. 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3가소49269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D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서 D의 딸 E의 계좌에서 F이 지정한 G 주식회사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입금해주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들의 아들인 F에게 대여해준 것이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해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5. 31. 원고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렸고, 이에 대해 같은 해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제2호증)을 작성해주었다.

(2) D은 F의 부탁으로 2016. 12. 16. D의 딸 E의 계좌에서 G 주식회사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입금해주었다.

(3) 피고들은 F의 부모로, 위 (2)항의 입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서를 작성해줄 것을 2016. 12. 24. D으로부터 전화로 요청받았고, 이에 D이 요구하는 문안으로 2천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서(갑제1호증)를 작성한 다음 사진을 찍어 핸드폰으로 그 사본을 D에게 전송해주었다. 위 연대보증서에는 “A(원고)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4) D과 피고들은 2015년경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이어온 사이인 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재기 이전에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전혀 없다.

(5) 피고들은 2016. 12. 14.부터 2017. 9. 25.까지 D의 계좌로 수시로 돈을 입금하였다.

나. 판단

원고와 F 사이에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따라서 F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다시 F에게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선 주채무의 채권자는 D으로 해석될 뿐이다(F이 금전거래의 당사자를 D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라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의사 역시 D의 채무에 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단지 연대보증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후적으로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로 바뀐다거나 피고들이 연대보증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D이 위 돈의 변제를 위해 자신의 것이 아닌 원고의 계좌번호를 피고들에게 알려주었는지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향, 판사 김현진, 판사 윤현정

1) 원고의 명시적 주장이 없지만, 예비적으로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더라도, D이 그 계약체결의 효력을 D 자신이 아닌 본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대리관계를
현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